학교법인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7인	2 인
재적임원	6인	2 인
참석임원	6인	2 인

Ⅰ. 회의일시 : 2025년 08월 27일(수요일) 오전 11:00
(회의소집 통보일 : 2025년 08월 18일 서면통보)

Ⅱ. 장　　소 :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회의실(대진대학교 본관 3층)

Ⅲ. 임원 출·결 사항

○참석임원

- 이　사(6 인) : 이태열, 박광훈, 김화옥, 김욱, 조태형, 한인희
- 감　사(2 인) : 윤갑중, 노기팔

○결석임원

- 이　사(1 인) : 윤은도
- 감　사(0 인) : 없음

○참석직원 : 백학문 법인사무국 사무국장(간사)

Ⅳ. 부의안건

1. 2025학년도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제1차 추가경정예산 안
2. 대진대학교 규정 제정 및 개정 안
3. 고성제생병원 개원 관련 안
4.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2차) 전임교원 신규 임용 예정자 제청 안
5. 대진대학교 2025.10.01.일자 정년트랙 전임교원 정년 보장 승진 임용 안
6. 대진대학교 2025.10.01.일자 정년트랙 부교수 승진 임용 안
7. 대진대학교 2025.10.01.일자 정년트랙 부교수 조기 승진 임용 안
8. 대진대학교 2025.10.01.일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정년트랙 전환 안
9. 대진대학교 직원 직급 승진 안
10. 대진대학교 생활관장 임용 안
11. 대진대학교 정규직원 신규 임용 안
12.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교원 면직 안

간서명	박 광훈	김 욱	노 기팔

13. 2026학년도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계획 안
14. 학교법인 산하기관 교직원 징계의결요구 안

Ⅴ. 회의내용

학교법인이사장의 사고로 이사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학교법인대진대학교 정관 제24조 1항에 의거하여 이사장이 지명한 이태열 이사를 전원 동의로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회의를 진행하다.
(이사장 직무대행기간 : 2025.08.27. ~ 2025.08.27.)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최를 선언하다. 당초 개최 통지한 내용대로 이사회를 진행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1호의 의안으로 '2025학년도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제1차 추가경정예산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1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김화옥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조태형 이사 : 재청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1호 의안에 대하여 김화옥 이사께서 동의하고 조태형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박광훈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호의 의안인 '2025학년도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제1차 추가경정예산 안' 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간서명	박 광훈	김 욱	노 기 팔

- 다 음 -

● 1. 대진고등학교 2025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액은 세입·세출 각각 9,250,173,000원(구십이억오천일십칠만삼천원)

2. 대진여자고등학교 2025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액은 세입·세출 각각 10,623,442,000원(일백육억이천삼백사십사만이천원)

3. 분당대진고등학교 2025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액은 세입·세출 각각 10,331,021,000원(일백삼억삼천일백이만일천원)

4. 일산대진고등학교 2025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액은 세입·세출 각각 10,961,056,000원(일백구억육천일백오만육천원)

5. 대진디자인고등학교 2025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액은 세입·세출 각각 9,031,262,000원(구십억삼천일백이십육만이천원)

6.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 2025학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액은 세입·세출 각각 9,213,206,000원(구십이억일천삼백이십만육천원)

- 이 상 -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2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규정 제정 및 개정 안'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2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김 욱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한인희 이사 : 재청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2호 의안에 대하여 김욱 이사께서 동의하고 한인희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박광훈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간서명	박광훈	김욱	노기팔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2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규정 제정 및 개정 안' 은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3호 의안으로 '고성제생병원 개원 관련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3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김 욱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조태형 이사 : 재청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3호 의안에 대하여 김욱 이사께서 동의하고 조태형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박광훈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3호의 의안인 '고성제생병원 개원 관련 안' 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다 음 -

● 고성제생병원에 요양병원 추가 개설하고 요양병원 실시설계, 설계감리 등 추가 개설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종단(고성제생병원 운영위원회)에 위임

- 이 상 -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4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2차) 전임교원 신규 임용 예정자 제청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4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간서명	박 광훈	김 욱	노 기팔

박광훈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조태형 이사 : 재청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4호 의안에 대하여 박광훈 이사께서 동의하고 조태형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박광훈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4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2차) 전임교원 신규 임용 예정자 제청 안' 은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5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2025.10.01.일자 정년트랙 전임교원 정년 보장 승진 임용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5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김　욱 이사 : 정량적 요건은 충족했으나, 정년보장은 단순한 승진이나 평가를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의 학문적 책임과 조직 기여도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므로 종합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부결 할 것을 제안하다.

조태형 이사 : 제안에 동의하다.

김화옥 이사 : 재청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5호 의안에 대하여 김욱 이사께서 제안하고 조태형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화옥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간서명	박광훈	김욱	노기팔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박광훈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5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2025.10.01.일자 정년트랙 전임교원 정년 보장 승진 임용 안' 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6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2025.10.01.일자 정년트랙 부교수 승진 임용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6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박광훈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조태형 이사 : 재청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6호 의안에 대하여 박광훈 이사께서 동의하고 조태형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박광훈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6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2025.10.01.일자 정년트랙 부교수 승진 임용 안' 은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간서명	박광훈	김욱	노기팔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7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2025.10.01.일자 정년트랙 부교수 조기 승진 임용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7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박광훈 이사 : 해당 교수의 지대한 노력으로 조기 승진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제도의 공정성과 일관성 유지, 그리고 학문적 성숙도 및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승진을 승인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으로 판단 되어 부결 할 것을 제안하다.

김화옥 이사 : 제안에 동의하다.

김 욱 이사 : 재청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7호 의안에 대하여 박광훈 이사께서 제안하고 김화옥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욱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박광훈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7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2025.10.01.일자 정년트랙 부교수 조기 승진 임용 안' 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8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2025.10.01.일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정년트랙 전환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8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한인희 이사 : 정량적 요건은 충족했으나, 정년트랙 전환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장기적

간서명	박 광훈	김 욱	노 기팔

관점에서의 학문적 책임과 조직 기여도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종합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부결 할 것을 제안하다.

조태형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김화옥 이사 : 재청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8호 의안에 대하여 한인희 이사께서 제안하고 조태형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화옥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박광훈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8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2025.10.01.일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정년트랙 전환 안' 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9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직원 직급 승진 안'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9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박광훈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김　욱 이사 : 재청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9호 의안에 대하여 박광훈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욱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간서명	박 강훈	김 욱	노 기팔

(찬성 :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박광훈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9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직원 직급 승진 안' 은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10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생활관장 임용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10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박광훈 이사 : 대진대학교 행정조직 정비 후 임용 할 것을 제안하다.

김 욱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김화옥 이사 : 재청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10호 의안에 대하여 박광훈 이사께서 제안하고 김욱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화옥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박광훈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0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생활관장 임용 안' 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11호 의안으로 '대진대학교 정규직원 신규 임용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간서명	박광훈	김 욱	노 기 팔

백학문 간사 : 제11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박광훈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조태형 이사 : 재청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11호 의안에 대하여 박광훈 이사께서 동의하고 조태형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박광훈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1호의 의안인 '대진대학교 정규직원 신규 임용 안' 은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 다 음 -

● 김　　을 정보운영팀 일반직 9급으로 임용함.

- 이상 1명(임용일:2025.09.01.) -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12호 의안으로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교원 면직 안'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12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조태형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한인희 이사 : 재청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12호 의안에 대하여 조태형 이사께서 동의하고 한인희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간서명	백 강훈	김 욱	노 기 팔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박광훈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2호의 의안인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교원 면직 안' 은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13호 의안으로 '2026학년도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계획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제13호의 의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박광훈 이사 :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의결에 동의하다.

김　욱 이사 : 재청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13호 의안에 대하여 박광훈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욱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박광훈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13호의 의안인 '2026학년도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계획 안' 은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14호 의안으로 '학교법인 산하기관 교직원 징계의결요구

간서명	박 광훈	김 욱	노 기 팔

안' 을 상정하며 의안설명을 요청하다.

백학문 간사 : 징계의결요구 안 중

관련 내용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한인희 이사 :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의결에 동의하다.

조태형 이사 : 재청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14호 의안에 대하여 한인희 이사께서 동의하고 조태형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박광훈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단 개인정보보호와 확정된 징계사안이 아니므로 붙임은 비공개 처리한다.

백학문 간사 : 징계의결요구 안 중

관련 내용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 상세하게 설명하다.

간서명	박광훈	김욱	노기팔

한인희 이사 :

징계위원회

에 징계를 요구하는 의결에 동의하다.

조태형 이사 : 재청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제14호 의안에 대하여 한인희 이사께서 동의하고 조태형 이사께서 재청하였으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박광훈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징계요구안이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단 개인정보보호와 확정된 징계사안이 아니므로 붙임은 비공개 처리한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이사회의록 간서명 대표임원 선임(안)입니다.

조태형 이사 : 이사회의록 간서명 대표임원으로 박광훈 이사, 김욱 이사, 노기팔 감사를 선임할 것을 동의하다.

김화옥 이사 : 재청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이사회의록 대표임원으로 박광훈 이사, 김욱 이사, 노기팔 감사로 선임할 것을 조태형 이사께서 동의하고 김화옥 이사께서 재청하였으

간서명	박광훈	김욱	노기팔

므로 표결에 부치다.

이　　사 : 참석이사 6명 찬성, 0명 반대

(찬성 :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박광훈 이사, 김화옥 이사,
김욱 이사, 조태형 이사, 한인희 이사　　반대 : 없음)

(이사 전원 거수로 찬성을 표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이사회의록 간서명 대표임원으로 박광훈 이사, 김욱 이사, 노기팔 감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하다.

이태열 이사장 직무대행 : 기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12:30에 폐회를 선언하다.

2025년 08월 27일 수요일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회

간서명	박 광훈	김 욱	노 기팔

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면 날인하다.

학교법인 대진대학교 이사장직무대행 이 태 열 이태열

이 사 박 광 훈 박광훈

이 사 김 화 옥 김화옥

이 사 김 욱 김욱

이 사 조 태 형 조태형

이 사 한 인 희 한인희

감 사 윤 갑 중 윤갑중

감 사 노 기 팔 노기팔

대진대학교 규정 제정 및 개정

규정 제정

특임교수규정

특임교수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특임교수의 자격,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임교수는 임용일 기준 특정 분야의 업적이 뛰어난 자로서 대학 및 사회 발전에 특별히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대학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된 교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 특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정부, 공공기관 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상장기업의 임원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전문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가진 자로 학교가 부여하는 특정 업무에 적합한 능력과 실적이 인정되는 자
4. 본교 정년퇴직한 전임교원 중 인문/사회/예술계열은 최근 3년간 외부연구 수주 금액이 총 1억원 이상, 이공계열은 최근 3년간 외부연구 수주 금액이 총 3억원 이상이고 현재 해당 연구과제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제 수행 기간이 정년 후까지 설정되었거나, 정년 후 예정된 자(단, 연구과제는 중앙행정기관 소관 국가연구개발 R&D 과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관련 용역에 한함)

제4조(구분) 특임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초빙특임교수: 제3조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자
2. 연구특임교수: 제3조 4호에 해당하는 자

제5조(임용절차) ① 소속 학과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서면 추천하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

② 특임교수를 채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의 공적서(연구특임교수는 연구과제 수행 내용 포함)
2. 소속 학과장 또는 관련 부서장의 추천서
3. 이력서

간 서 명	박 강훈	김 욱	노 기 팔

4. 활동계획서

5.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제6조(임용기간) ① 특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 시 재임용할 수 있다.

② 초빙특임교수는 임용기간 동안의 정부재정지원사업, 외부사업 등 유치 실적, 연구비 수주 실적, 논문실적, 학교발전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③ 연구특임교수는 수행 중인 과제의 연구기간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 단, 재임용 시에는 제3조 4항의 자격 조건을 준용한다.

④ 재임용은 제5조 ①항의 절차에 따라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실시한다. 이때 소속 대학(원)장 또는 관련 부서장은 재임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처우) ① 특임교수는 본교의 공식적 의식 및 행사에 있어서 본교 전임교원과 동등한 예우를 받는다.

② 특임교수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여된 임무 및 업무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연구특임교수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연구비 범위 안에서 해당 외부 재원 운영 지침에 따라 연구비, 보수(퇴직금, 의료보험료 포함)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 시 따로 정한다.

③ 필요에 따라 특임교수에게 연구실, 실험실 등 교육 및 연구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복무) ① 연구특임교수는 본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담당할 수 없다.

② 학과 또는 대학(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강, 세미나, 학생 지도 및 대학(원)생 연구 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위촉의 취소) 특임교수가 학교의 설립이념 및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만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임교수의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도 0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간 서 명	박 광윤	김 욱	노 기팔

교원창업규정

교원창업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교원창업규정은 산학연계의 실질적 기반 구축과 국가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진대학교 소속 교수의 창업 및 참여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으로서,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본교 교원이 임용기간 중 습득한 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창업자가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직원(대표이사, 등기된 사내이사 등)에 취임하는 경우
   나. 창업자 또는 창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별관계인" 이라 한다)가 명의자와 관계없이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을 합하여 창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2. "교원" 이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전임교원을 말한다.
3. "창업기업" 이라 함은 본 규정에 의거 교원창업자가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4. "교원창업자" 라 함은 본 규정에 의해 대학의 허가를 받아 창업하거나 창업기업의 임원으로 취임한 본교 교원을 말한다.
5. "실험실 창업" 이라 함은 본교 교원이 본교 실험실 안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서 특별관계인은 창업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6촌 이내의 혈족
3. 4촌 이내의 인척
4. 창업자 단독으로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

간 서 명	박 방훈	김 욱	노 기팔

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해당 법인 또는 단체

제3조(주관부서)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한 제반절차와 교원창업심의위원회 관련 업무는 창업지원단에서 담당한다.

제 2 장 교원창업심의위원회

제 4 조(교원창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교원창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지원단 내에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교육혁신처장, 기획처장, 총무처장, 산학협력단장, 창업지원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창업지원단장이 추천한 교내외 창업분야 전문가를 4 인을 포함한 총 9 인 이내로 위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창업지원단장이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창업에 대한 대학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교원창업에 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교원창업기업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원창업에 따른 대학의 지원(투입)분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원창업 및 교원창업 기업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는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 장 교원창업 신청 및 승인

제6조(신청자격) 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창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대학에 3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으로 벤처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교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3년 미만 근속한 교원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창업을 신청할 수 있다.
   가. 기술의 특성상 창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나.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간 서 명	박 광훈	김 욱	노 기팔

다.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7조(교원창업신청) 교원이 창업하고자하는 경우 별지서식 1호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각 호의 서류를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원창업 신청서
2. 교원창업 사업계획서 및 첨부자료 각 1부
3. 연구실 사용 허가 신청서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창업 관련자료(기술이전계약서, 양허 지식재산권 목록 등)

제8조(창업심의 및 승인) ① 교원창업심의위원회에서는 교원창업 타당성 및 절차를 검토하고 심의결과를 총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해당 교원에게 통보한다.

② 창업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교원은 대학의 교원인사규정 등에 따라 겸직 절차를 진행한다.

③ 연구실을 창업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교원창업자는 시설자산팀에 공간사용에 관한 절차를 진행한다.

④ 창업겸직승인이 완료된 교원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교원창업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확인서 등을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창업겸직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1. 교원창업자는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서식 2호 창업연장신청서를 창업지원단에 제출한다.
2.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의 연장신청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창업교원에게 통보한다.
3. 교원창업자는 제2호의 통보 내용을 바탕으로 교무팀에 해당 창업교원의 겸직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4. 연구실을 창업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교원창업자는 제2호의 통보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자산팀에 공간 사용에 관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9조(교원창업승인 취소) 창업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 8조에 의한 겸직을 소정의 기일 내에 승인받지 못한 경우
2. 제 8조에 의한 기업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지 않는 경우
3. 창업 등의 신청 관련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4.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활동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5. 사전허가 없이 승인된 주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승인된 사업내용 또는 활동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 또는 활동하는 경우

제 4 장 교원창업 지원

간 서 명	박광훈	김욱	노기팔

제 10 조(대학의 지원 등) 대학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설립지원
2. 대학 내의 연구실 사용지원, 후생복리시설 이용지원
3. 정보통신망 사용지원

제11조(창업자의 의무) ① 교원창업자는 기업활동에 우선하여 본교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 및 연구활동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② 교원창업자는 본교의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원창업자가 창업하거나 임직원에 취임하고자 하는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이어야 하며 창업신청 시 동 형태의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창업겸직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환하여야 한다.

④ 교원창업자는 자신의 책임 하에 창업 및 창업회사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⑤ 교원창업자는 창업기간 및 창업 이후에도 본교의 기밀을 제3자(창업기업의 임원, 피고용자, 기업 승계인, 주주 등)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⑥ 교원창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 관련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위험물을 본교에 반입하거나 사용할 때
2. 연구실의 구조를 변경할 때
3. 기타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12조(창업공간) ① 교원창업자는 대학의 창업겸직승인을 근거로 대학 시설관리 부서의 승인절차를 통해 대학 내의 연구실이나 기타 허용된 공간을 창업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그 공간의 사용권을 양도 또는 공유할 수 없다.

② 대학은 필요시 교원창업자에게 관련 학과 및 단과대학, 대학본부의 관련부서로부터 시설 및 공간 사용의 이상 유무에 대한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교원창업자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산정 및 징수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창업 교원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경우, 제반 비용 및 관련 절차는 창업보육센터 관련규정에 따른다.

④ 창업공간의 사용기간은 창업겸직승인 기간과 연동하여 허가될 수 있다.

⑤ 창업공간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대학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연장신청서, 사업실적 및 기타 심의자료를 허가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원창업자 및 창업기업이 창업 및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공간 사용이 부적절하거나 대학의 품위에 손상이 가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허가기간 중에라도 관계없이 교내 공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간 서 명	박 정훈	김 욱	노 기팔

⑦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기간 내라도 사용허가가 취소되면, 교원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사용허가 취소일로부터 2개월 내에 사용공간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⑧ 교원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임직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학의 시설, 장비 등을 분실 또는 손상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대학에 배상하여야 한다.

⑨ 교원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본교 내에 방재관리에 관한 제 규정 및 대학 내에 비치된 방재설비의 사용법을 숙지하여 다음 각 호의 상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소각행위를 하지 못한다.
2. 방재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대학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창업교원 및 교원창업기업은 대학 또는 관련 기관이 실시하는 방재 관련 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4. 기타 본교에서 방재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의 관련 방재관리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⑩ 대학은 교원창업자에 의한 공간 사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의 가입을 교원창업자 및 창업기업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보험료를 교원창업자 및 창업기업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3조(겸직허가) ① 창업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교원창업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라 겸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창업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교원의 겸직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기간이 종료되는 교원창업자가 연장을 원할 경우, 겸직 신청서 제출 및 승인 절차를 통해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 5 장 재정적 기여 및 의무

제14조(창업기업 주식 기증) ①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은 자본금 2억 원을 한도로 하여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창업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의 5%를 본교 발전기금(현물)으로 무상 증여한다. 단, 최초 법인설립 시 자본금이 2억 미만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2억원이 될 때까지 증자시마다 5%에 맞추어 추가로 무상 증여한다.

② 창업기업이 상장되는 경우 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상장 시 총 주식수의 1% 이상을 추가로 본교에 무상 증여한다

③ 교원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에 제출하여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1. 주식증여계약서
2. 주주명부
3. 주식증여증서
4. 주권 미발행 확인서
5. 법인인감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간 서 명	박 광준	김 욱	노 기팔

7. 기타 대학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벤처기업확인서, 기술사용허가 계약서, 투자확인서 등)

④ 제3항 2호의 주주명부가 별도로 있는 경우는 그 주주명부를 복사하여 "원본대조필 (법인인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창업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및 매각될 경우 교원창업자는 지식재산권의 매각, 양도, 실시허락 등 제반사항에 대해 산학협력단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창업기업의 대학 주식 기증분의 지분율 및 주식 가치의 변동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교원창업자는 이를 변동 발생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총장에게 사전 고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공동매도권) ① 대학은 제14조에 따라 기부 받은 주식의 공동매도권 등 그 행사에 관한 권리를 확보한다.

② 교원창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대학에게 서면 통지한다.

1.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2. 당해 제3자의 신원
3. 양도주식수
4. 양도예정일
5. 기타 양도의 주요조건

③ 교원창업자가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은 교원창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처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④ 대학은 제②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창업자에게 공동매도권 행사 여부,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교원창업자는 대학이 주식의 공동매도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매도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⑤ 대학이 제④항의 공동매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식양수예정자가 교원창업자와 대학으로부터 교원창업자와 대학의 지분 비율에 따라 주식을 양수하지 않는 한, 교원창업자는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단, 대학이 동의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활용) 교원창업자 및 창업기업이 개발한 지식재산권도 교내 직무발명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대진대학교 직무발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변경 신고 및 보고) ① 교원창업자는 창업 승인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변동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창업지원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받은 신청서 상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

간 서 명	박 영훈	김 욱	노 기팔

3. 사업자등록증 상의 변경
4. 휴·폐업 또는 흡수·합병 등 기업의 형태 변경
5. 그 외 창업자 및 창업기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변경

② 교원창업자는 창업신청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연간 활동 및 운영보고서 및 법인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창업기업의 흡수·합병, 매각 및 폐업) ① 창업기업이 흡수, 합병, 매각 및 폐업을 할 경우 창업기업은 모든 채권 및 채무관계의 해소에서 대학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19조(비밀유지) 교원창업자와 창업에 관련된 교원은 창업활동에서 취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하며, 창업이 끝난 후에도 일정기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도 0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정 이전 창업에 참여 중인 교원은 이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간 서 명	박 광훈	김 욱	노 기팔

별지서식 1. 교원창업 신청서

교원창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교 번	
	소 속		직 위	
	주 소	(우 :)		
창업회사	기 업 명		설립(예정)	
	자 본 금	천원	창업 분야	
	고용인력		업종/업태	
	소 재 지	(우 :)		
창업기술	지식재산권과 연계된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연구과제 재원	정부( ), 정부+민간( ) 민간( ), 기타( )	위탁자	
	기술의 명칭		발명자	
	특허번호		소유자	
창업겸직신청기간		[겸직신청기간] *3년을 원칙으로 함*		
창업자 지원신청 사유				
추천사유		(소속 대학(원)장 / 부서장 추천)		

위와 같이 교원창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소속 대학(원) 장 : (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연구실 사용 허가원 1부.(연구실 창업의 경우)
3. 교원창업에 따른 실시 양허 지식재산권 목록 1부

대진대학교 총장 귀하

간 서 명	박 광춘	김 욱	노 기팔

별지서식 2. 교원창업 연장신청서

교원창업 연장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교 번	
	소 속		직 위	
	주 소	(우 :)		
창업회사	기 업 명		설 립 일	
	사업자등록번호		창업 분야	
	고용인력		업종/업태	
	소 재 지	(우 :)		
창업기술	창업아이템과 연계된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연구기간	
			연구비	천원
	연구과제 재원	정부( ), 정부+민간( ) 민간( ), 기타( )	위탁자	
	기술의 명칭		발명자	
	특허번호		소유자	
창업겸직신청기간		[겸직 신청기간] 3*년을 원칙으로 함*		
창업자 지원신청 사유				
추천사유		(소속 대학(원)장 / 부서장 추천)		

위와 같이 교원창업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소속 대학(원) 장 : (인)

첨부서류 : 1. 사업실적결과물(매출증빙, 고용인원 증빙, 그 외 결과물, 각종 인증실적 등)

대진대학교 총장 귀하

간 서 명	박 광훈	김 욱	노 기팔

별지서식 3. 교원창업 사업계획서

교원창업 사업계획서

20 . .

제출자	성 명		소 속	
	연락처		e-mail	

간 서 명	박 광출	김 욱	노 기팔

사업계획서

1. 대표자(예비창업자) 인적사항

<table>
<tr><td>성 명</td><td colspan="3"></td><td>생년월일</td><td colspan="3"></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최종학력</td><td>졸업년도</td><td colspan="2">학 교 명</td><td colspan="2">전 공</td><td colspan="2">비 고
(취득학위 등)</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경 력</td><td rowspan="2">근무기간</td><td colspan="3">근 무 처</td><td colspan="2" rowspan="2">담당업무
(최종직위)</td></tr>
<tr><td colspan="2">근무처명</td><td>전화번호</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d></td><td colspan="2"></td></tr>
<tr><td>기타특기사항
(자격증,상벌,
연수,대외활동
사항)</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2">연구개발 및
사업화실적</td><td>개발과제명 및 내용</td><td>근무처</td><td>개발기간</td><td>사업규모
(소요자금)</td><td colspan="2">비고
(사업화
현황 등)</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경영철학 및
경영목표</td><td colspan="7">※ 창업동기, 향후 회사발전계획, 인사/조직관리 사항 등을 기술</td></tr>
</table>

간 서 명	박 정훈	김 욱	노 기팔

2. 기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설 립 일 자		상시 근로자수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자가,임차
사 업 장			자가,임차
			자가,임차

업 종		주 제 품	
관계회사		자 본 금 (납입자본금)	백만원
지식재산권 제품인증, 기술제휴 등			

연혁	년 월	주요내용 (자본증감,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및 주요경영내용 변경 등)

간 서 명	박 광준	김 욱	노 기팔

3. (창업)경영진 및 주요주주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직 위	성 명	생년월일(남/여)	대표자 관계	소유주식 (금액)
경영진					
주 주					
합 계					

4. 주요시설 및 장비 현황

사업장 규모	사무실			면적 (㎡)
	연구소			면적 (㎡)
주요장비 규모	구분	장비명	수량	용도
	연구 장비			
	기타			
	총 계			

간 서 명	백 광훈	김 숙	노 기팔

5. 기술개발 내용

<table>
<tr><td>기술 및 제품명</td><td colspan="6"></td></tr>
<tr><td>개 발 기 간</td><td></td><td>개발비용</td><td colspan="2">백만원</td><td>제품화여부</td><td>여, 부</td></tr>
<tr><td>개 발 방 법</td><td colspan="6">(단독, 공동)공동개발의 경우 상대처 :</td></tr>
<tr><td>권 리 구 분</td><td colspan="6">특허, 실용신안, 의장권, 신기술 사업, 자체기술개발 등</td></tr>
<tr><td rowspan="2">권리자(발명자)</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 rowspan="2">비고</td><td row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r>
<tr><td>기술(제품) 용도 및 기능</td><td colspan="6"></td></tr>
<tr><td>대체 또는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기술/기능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기술하되 제품의 핵심기술과 보유여부 포함)</td><td colspan="6"></td></tr>
<tr><td>기술의 파급효과
(적용범위 및 응용성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계획한 제품 포함)</td><td colspan="6"></td></tr>
<tr><td>기대효과
(매출증대,고용창출, 경영개선 효과 등)</td><td colspan="6"></td></tr>
</table>

간 서 명	박 광 훈	김 욱	노 기 팔

6. 시장 현황

<table>
<tr><td rowspan="2">시장현황 및 특성
(단위 : 백만원)</td><td>-시장규모
<table><tr><td>구 분</td><td>직전년도</td><td>당해년도</td><td>차기년도</td><td>차차기년도</td></tr><tr><td>세계시장</td><td></td><td></td><td></td><td></td></tr><tr><td>국내시장</td><td></td><td></td><td></td><td></td></tr></table></td></tr>
<tr><td>※작성근거(반드시 기재)

-시장특성(향후 3년간 자료로 판단)
<table><tr><td>구 분</td><td>국 내</td><td>국 외</td></tr><tr><td>시장상태(독점/경쟁)</td><td></td><td></td></tr><tr><td>안 전 성</td><td></td><td></td></tr><tr><td>지 속 성</td><td></td><td></td></tr><tr><td>성 장 성</td><td></td><td></td></tr></table></td></tr>
<tr><td>주요 수요처
(년)
(수주 또는
납품현황만을
기재)</td><td><table><tr><td>수 요 처 명</td><td>수요처의
총수요규모</td><td>당사 수주(납품)</td></tr><tr><td></td><td></td><td></td></tr><tr><td></td><td></td><td></td></tr><tr><td></td><td></td><td></td></tr><tr><td></td><td></td><td></td></tr><tr><td></td><td></td><td></td></tr></table></td></tr>
<tr><td rowspan="2">경쟁업체 현황
(업체명,
기술개발계획,
양산/증산계획 등)</td><td>-국내시장</td></tr>
<tr><td>-국외시장</td></tr>
</table>

※ 시장특성은 유무, 고저등으로 간략하게 표기

※ 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로 추가 작성 바람

간 서 명	박광훈	김 욱	노 기팔

7. 향후 판매전략 및 판매계획

(단위 : 백만원)

판매 전략					
판매 계획	제 품 명(상품명)	직전년도	당해년도	차기년도	차차기년도
	기타 제품				
	계				

※ 판매전략은 경쟁제품과의 비교등을 통한 신청기술(제품)의 판매전략 위주로 기술

※ 판매계획은 현재 생산중이거나 계획중인 제품중 신청기술(제품)을 포함한 주력 제품 위주로 기술

8. 사업추진계획

향후 추진일정 계획	
인력수급 계획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설비투자계획 (추가 설비명, 구입처, 규격, 금액 등을 명시)	

9. 대학투입분에 대한 주식분배, 기술료 지급 및 환원계획

구 분	내 용
주식분배계획	5%(1억원 기준)
기술료 지불 계획	
이익 환원계획	매출액의 00%

간 서 명	박 원술	김 숙	노 기팔

별지서식 4 연구실 사용 허가 신청서

연구실 사용 허가 신청서

본인은 대학의 연구성과를 아이템으로 하여 창업을 함에 있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실 및 연구시설을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성 명 :
2. 소 속 :
3. 직 위 :
4. 사업내용

업 체 명		구 분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업 종		사업아이템	
내 용			

5. 연 구 실

위 치		면 적	
주요기자재			

신청일 : . . .

신청인 : (인)

대진대학교 총장 귀하

간 서 명	백 광훈	김 욱	노 기 팔

규정 개정

국내여비규정

국내여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5년도 0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 지급 구분표 <신설 2016.07.15>, <개정 2021.11.16>

구 분	교 직 원	비고
제1호 가목	총장	
제1호 나목	부총장	
제1호 다목	교무위원, 부속기관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직원(3급~5급), 팀장**	
제1호라목	**직원(6급이하)**	
제2호	비전임교원, 조교, 계약직원	

<별표 2> 국내여비 정액표 <신설 2016.07.15>, <개정 2019.04.24, 2021.11.16>, 2021.12.08., 2023.06.28> (단위: 원)

구 분	국내여비 정액표				
	철도운임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제1호 가목	KTX(특실)	Business	25,000	실비	실비
제1호 나목	KTX(특실)	Economy	25,000	실비	실비
제1호 다목	**KTX(특실)**	Economy	25,000	실비	**30,000**
제1호 라목	KTX(일반)	Economy	25,000	**실비 (상한액: 150,000)**	**30,000**
제2호	KTX(일반)	Economy	25,000		**30,000**

※ 숙박비 : 학회 및 세미나의 개최기관이 지정 또는 추천한 호텔의 숙박비가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학회 및 세미나의 개최 지정 또는 추천호텔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간 서 명	박 광호	김 숙	노 기 팔

국외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 규정은 2025년도 0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국외여비 지급 구분표 <신설 2016.07.15>, <개정 2021.11.16>

구 분	교 직 원	비고
제1호 가목	총장	
제1호 나목	부총장	
제1호 다목	교무위원, 부속기관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직원(3급~5급), 팀장**	
제1호 라목	**직원(6급이하)**	
제2호	비전임교원, 조교, 계약직원	

간 서 명	박광훈	김욱	노기팔

대진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2차) 전임교원 신규 임용 예정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학 과 명	초빙분야	성 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국제협력대학	경영학	류		2025.09.01. ~ 2027.08.31
산학협력단	이공계열 (부교수)	김		
산학협력단	이공계열 (부교수)	김		
산학협력단	IT분야 (조교수)	정		
산학협력단	토목공학 (부교수)	문		

– 이상 5명 –

간서명	박 광 훈	김 욱	노 기 팔

대진대학교 2025.10.01.일자 정년트랙 부교수 승진 임용

성 명	생년 월일	소 속	임용기간
구		간호학과	2025년10월01일 ~ 2031년09월30일

– 이상 1명–

간서명	박 광호	김 숙	노 기팔

대진대학교 직원 직급 승진

대진대학교 직원 직급 승진(일반직)

번호	현 부 서	성 명	생년월일	현직급	승진직급
1	교무팀	이		일반직7급	일반직6급
2	학생복지팀	김			
3	대학원교학팀	이		일반직8급	일반직7급
4	시설자산팀	송			

- 이상 4명 (승급일자 2025년 09월 01일) -

대진대학교 직원 직급 승진(기능직)

번호	현 부 서	성 명	생년월일	현직급	승진직급
1	시설자산팀	손		기능직7급	기능직6급

- 이상 1명 (승급일자 2025년 09월 01일) -

간서명	박 강호	김 욱	노 기팔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교원 면직

소속	성명	생년월일	과목	퇴직일	비고
대진고	안		영어	2025.08.31	명예퇴직
대진여고	황		기술.가정		명예퇴직
대진전자통신고	김		영어		정년퇴직
대진전자통신고	이		전기전자		정년퇴직
분당대진고	김		수학	2025.08.27	의원면직

- 이상 5명 -

간서명	박 광호	김 숙	노 기 팔

2026학년도 학교법인 산하고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계획

가. 시험과목 및 배점

구분	총배점	시험과목 및 배점	
1차 (교육청위탁)	100점	서울특별시교육청	5배수, 사립 복수지원제
		경기도교육청	5배수
		부산광역시교육청	5배수, 공·사립동시지원 제도 참여X
2차 (법인 자체 시행)	100점	수업실연 (50점), 심층면접 (50점) [학습지도안 문제 선 공개 ➔ 작성 제출]	

나. 세부 사항

1) 최종합격자 : 1차(30%) + 2차(70%)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

2) 2차 시험 과락 점수 : 2차 시험 각 과목 배점의 40% 미만

3) 신규교사 채용에 관한 세부 운영계획은 이사장에게 위임

– 이 상 –

간서명	박 광훈	김 욱	노 기팔